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60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윤희, 조현복

피 고 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20. 11. 19.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원주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6. 8. 30. 체결된 사업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 해약 합의를 1,006,164,3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6,164,3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은 날짜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6년 말경부터 원주시 E 일원 약 68,000㎡에서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원주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하며,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약 28억원을 지급하였다.

2) C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16인은 2010. 11.경 강원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10. 12. 7. C의 대표이사인 F를 대표자로 하여 'C 외 16인'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권 양수

1) 원고(과거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고, 2018. 1. 1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4. 6. 9. C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1차 양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권 양도 · 양수의 대상) 1) 본 계약에 따르는 사업권 양도 · 양수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 또는 사업시행권 2.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주(건물포함) 관련 작업 성과물 일체 3. 인 · 허가 및 설계관련 도서 등 일체 4. 인 · 허가상의 건축주 명의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C의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 제5조 (양도 · 양수의 금액 및 지급시기) 1) 원고는 C에 사업권 양도 · 양수의 대가로 50억 원과 시행이익의 20%를 지급한다. 2) 사업권 양도 · 양수의 대가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계약금 5억 원: 계약 체결시 1차 중도금 15억 원: 브릿지론 조달시 2차 중도금 30억 원: 금융 본 PF 기표시 잔금 시행이익의 20%: 사업 정산 후 1개월 내 제6조 (위약금 및 계약금 반환) 1) C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C는 원고가 기 지급한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별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0조 (특약사항) 1) 본 계약 체결 후 C는 원고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하여 양도, 승계, 증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이 최우선한다.

2) 원고는 2015. 3.경 C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후 원고는 2016. 3. 30. C,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F와,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C는 2014. 12. 30. H와 사업권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C를 대위하여 2016. 7. 15.까지 원고에게 7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6. 3. 30. C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양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 매매계약 일체의 권리와 사업권,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 양수하며 C와 피고는 제4조, 제5조를 성실히 이행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매매계약의 범위] 1. 양도, 양수의 범위는 제2조 매매 목적물의 모든 사업, 부동산 매매 및 사업용지의 인, 허가 사항 일체로 한다. 2. 본 계약 이후의 사업 추진은 피고가 진행한다. 제4조 [C의 권리 및 의무]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 접수 시 해당 관청에서 필요서류를 원할 경우 사업부지의 전체 토지사용승낙서(관계서류 일체), 매매계약서를 피고 명의로 지주와 계약을 체결한다. (단, 미계약 토지의 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는 피고가 체결한다) 4.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약(제3자 시행방식)에 따른 이 사건 사업 토지공급 계획 공고에 따라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피고와 협의하여 체결한다. 제5조 [피고의 권리 및 의무] 1.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사업부지의 잔금 지급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다. 2. 사업 진행에 대한 시공사 선정, 분양 및 금융기관 PF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진행한다. 3. 미 계약 토지의 계약금은 피고가 지급하며 피고의 명의로 계약하기로 한다. 4. 계약 체결 후 C가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공한 후 사업권 양도 ·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은 제6조에 따라 피고가 자금을 집행한다. (단, 미계약 토지의 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는 피고가 체결한다) 제6조 [사업권 매매금액 및 대금 지급방법] 1. 토지대금 및 사업권 매매금액은 33,000,000,000원으로 정한다. 2. 사업부지 토지비 잔금 지급은 사업승인 후 PF 진행 시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토지비 잔금 이외의 기투입한 사업비 일체는 본조 제1항의 매매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제4조 제1항 C가 토지사용승낙서 미비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될 시 대금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양도 · 양수계약 효력 및 사업추진 방법] 2. C는 토지주로부터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피고 명의로 계약하고 인, 허가를 득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2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1. 본 계약 체결 후 모든 인허가 업무는 피고가 주관하되 기존에 심의 허가된 모든 업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C가 협조한다. 2. C는 피고 명의로 사업 진행의 인허가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설계, 토지사용승낙서,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변경

1)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23인은 2016. 9. 22. 원주시장을 통해 강원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C 외 16인'에서 '피고 외 23인'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신청을 하였다. 원주시장은 2016. 11. 22.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1인이 사업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5. 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신청을 취하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7. 강원도지사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7.9%(국공유지를 제외할 경우 10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C 외 16인'에서 피고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17. 4. 28.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1) 원고는 2017. 6. 27. C에 'C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10억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6. 29. C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8. 3. 19.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3267호로 위약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8. 24. 'C는 원고에 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9. 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2.경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326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100,224,814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타채10404호로 '이 사건 2차 양수계약과 관련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청구권(사업권매매대금 청구권, 이 사건 2차

양수계약 해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등)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 2. 1.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9. 2.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타채10404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9.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은 2016. 8. 30.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사업권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피고와 C가 작성한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C의 의무인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및 이 사건 2차 양수계약 제4조 제1, 4항을 C가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을 해약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관하여 서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2016. 8. 30.자 해약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약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해약 합의서에 따른 이 사건 2차 양수계약 해약 합의를 '이 사건 해약 합의'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 내지 15, 18 내지 20, 23, 27 내지 35, 37 내지 42, 45, 50 내지 5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해약 합의는 C가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사업권 매매대금 등 채권을 포기하는 취지이다.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해약 합의를 하였고,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자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중 1,006,164,383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해약 합의를 취소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C와 피고는 이 사건 해약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양수계약과 무관하게 C의 각종채무를 변제하면서 C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해약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H은 2016. 3. 30. C를 대위하여 2016. 7. 15.까지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원고에게 7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은 C가 원고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고(제10조 제1항),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을 해제할 경우 C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제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C는 원고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7. 6. 27. C에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10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8. 9. 8. 'C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3267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해약 합의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C가 이 사건 해약 합의를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 26, 46호증, 을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약 합의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C는 2006년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라한다)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C는 토지소유자 16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C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PF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C는 2014. 12. 30. H(대표이사 I)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I은 그 무렵 친분관계가 있는 J(피고 대표이사)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J은 2015. 6.경 피고를 설립한 후 C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과거 시행자였던 'C 외 16인'은 2015. 10. 7.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의 현 대표자인 C를 해임하고, 피고를 토지소유자 대표로 선임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위 임시회의 결의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대표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 피고 및 토지소유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C의 모든 지위가 피고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C와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르면, C는 기존에 C 명의로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토지사용승낙서 포함)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고(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이 사건 2차 양수계약 체결 이후 미계약 토지에 관한 계약 체결 및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사업부지의 잔금 지급, 시공사 선정, 분양 및 금융기관 PF 등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업무는 피고가 진행하며(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5조), 피고는 C에 이 사건 사업권 등의 양도 대가로 330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마) C와 피고는 2016. 8. 30. 이 사건 해약 합의를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해약합의서가 2019년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약 합의서에는 2016. 7. 26. 발행된 C의 인감증명서와 2016. 6. 8.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와 C가 2019년경 이 사건 해약 합의를 작성하면서 3년 전에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찾아내 첨부하는 경우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약 합의서는 작성일로 기재된 2016. 8. 30.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해약 합의에 따르면, C는 피고에게 사실상 이전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약 합의 전후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임장을 교부받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고, 2016. 9. 2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대표자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말경부터 C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2. 27.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변경신청을 하면서 과거 토지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와 C는 이 사건 해약 합의 전후로 마치 이 사건 해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지위 이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C의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약 합의는 실질적으로 C가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이 되는데, 아래 바)항에서 보는 것처럼 C가 진정한 의사로 이러한 합의를 체결하였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는 C가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약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가 C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C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별도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2016. 9. 22.자 시행자변경신청 및 2017. 2. 27.자 시행자변경신청은 이러한 별도 합의에 기초한 것일뿐, 이 사건 2차 양수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나 별도 합의의 존재는 인정할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해약 합의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더욱 추단케 한다.

(1) 앞서 본 것처럼 C는 이 사건 해약 합의 당시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위를 사실상 이전한 상태였고, 매수인 명의, 인허가 명의, 사업시행자 명의의 최종적인 이전은 피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준비를 마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C의 의무 중 C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지 않았다. 반면 피고는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미계약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C에 사업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가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않았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해약 합의를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2) C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를 위해 이미 약 28억 원을 투입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1차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 대가로 50억 원 및 시행이익의 20%(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은 F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시행이익은 약200억 원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3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이 사건 사업권에 높은 가치를 책정하면서 양도를 추진하던 C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 해약 합의를 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사실상 무상으로 사업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3) 피고는 C의 채무 약 34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들은 대부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으로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라 당연히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C에게 사업권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로부터) 시행이익의 50%를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결국 이 사건 해약 합의는 C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진정한 의사 없이 피고와 통정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해약 합의의 실질은 C가 이 사건 2차 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만을 이행하면서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해약합의는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3267호 판결에 따라 C에 대하여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원금 10억 원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65,342,466원[= 1,000,000,000원 × 0.15 × (2년 + 159일 / 365일)]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약 합의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6,164,383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 1)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이 부활한다(대법원2016. 3. 24. 선고 2015다25018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서 C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양도계약에 따른 사업권 등 매매대금 중 1,006,164,383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 위 채권은 C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
- 2) 그러나 위와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이 사건 해약 합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완료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해야 할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3)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교식, 판사 공민아, 판사 정지원